

國際動物命名規約

金 煥 淑 譯

譯者의 말

動物命名에 관한 國際規約의 맨 처음의 것은 1901年第5次 國際動物學會議에서 採擇되어 1904年の第6次會議를 거쳐서 1905年に 佛·英·獨 3個國語로 파리에서 出版된 “國際動物命名規約”이었다. 그후 이規約은 여러번 수정 또는 추가되어 왔다. 그러나가 第2次 大戰後인 1948年に 파리에서 열린 第13次 國際動物學會議에서 舊規約의 綜合改正企劃이 인정되었다. 이리하여 1958年 倫敦에서 열린 國際動物學會議에서 새로운規約가 審議 採擇되고 1961年 倫敦에서 이것이 佛·英

兩個國語로 출판되었다. 1964年에는 修正版이 나왔다.

1964年 規約은 대영달, 藉論, 本規約의 基礎 날짜, 規約凡例, 規約本文 86條(1961年版은 87條)로 되어 있으나 1963년에 第31條를 勸告 31A로 하기로 하였다), 5가지의 附錄, 語彙, 索引으로 되어 있다.

譯者は 몇 해전의 1961年版 英文 規約을 번역하였는데, 그후 Ernst Mayr(1969)의 “Principles of Systematic Zoology”에 실려 있는 1964版의 英文規約를 대조하여 修正된 点을 번역 수정하였다. 번역시에는 日本語 번역본(1965) 대조도 하였다. 여기서는 紙面關係로 規約 本條文만을 살기로 한다.

1958年 7月 倫敦 第15次 國際動物學會議에서 採擇된 國際動物命名規約¹⁾

前 文

國際動物命名規約은 國際動物學會議에서 公認된 規則과 勸告의 體系이다.

이 規約의 目的은 動物學名의 安定性과 普遍性을 增進하고 또 各 學名의 唯一性과 獨特性을 보증하는 데 있다. 이 規約의 全條款은 이런 目的에 도움이 되지만 分類學의 思考나 行動의 自由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先取權은 動物命名法의 基本原則이다. 그러나 慣用語義로 오랫동안 인정받아 온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規約에 明示된 條件下에서 先取權의 適用을 완화할 수 있다.

命名法의 安定性에 위협을 주는 개개의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國際動物命名法審議會²⁾가 이 規約의 엄밀한 適用을 저격된 조건하에서 停止시킬 수 있다.

I. 動物命名法

第1條 動物命名法은 生存하고 있든지 絶滅하였든지

1)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adopted by the XV International Congress of Zoology, London, July 1958.

2)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Zoological Nomenclature.

아놓든 自然界에 있다는 것이 알려진 動物의 分類學의 單位(分類群, taxa; 單數 taxon)에 適用하는 學名의 體系이다. 이 規約은 科·屬·種 등의 여타 群[VIII, IX, X; 動物]에 만든 것에 관해서는 第16條 a(viii)를 참조]의 名稱에 관계가 있다. 假說의 概念, 畸形標本 또는 雜種 따위, 亞種內 品種 따위에 주어진 名稱이나 분류학적 獨特 이외의 것에 提案된 名稱은 제외된다.

第2條 動物命名法의 獨立：動物命名法은 다른 命名法體系에는 관계가 없다. 即 어떤 動物分類群의 名稱이 動物界에 속하지 않는 分類群의 名稱과 같다는理由만으로서는 無効로 되지는 않는다.

(a) 動物界에 分類群의 轉入：만약 어떤 分類群이 動物界에 轉入되는 경우에는 그 分類群의 名稱 또는 名稱들은 그 原著의 日字와 著者名과 함께 動物學名에 편입된다.

(b) 動物界로부터 分類群의 轉出：만약 어떤 分類群이 動物界로부터 轉出되는 경우에는 그 名稱 또는 名稱들은 動物界의 名稱들과 異物同名인 것으로서 존속한다.

勸告 2A. 動物界外에서 이미 使用된 名稱：動物의 屬名에는 動物界 밖에서 이미 屬名으로 사용된 名稱을

제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3條 出發點 : Linnaeus의 *Systema Naturae* 第10版은 動物學에 있어서 二名法의 一貫하고도 廣範한 適用의 시작을 나타낸다. 이 規約에서는 1758年 1月 1日이라는 日字를 편의상 이 著書의 出版日字로 지정하고 動物命名法의 出發點으로 한다. 1758年에 출판된 다른 어떠한 著書도 이 第10版보다 뒤에 출판된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II. 動物名의 單語數

第4條 種群보다 높은 階級의 分類群 : 種群보다 높은 階級의 分類群의 名稱은 한 單語로 구성된다(一名式).

第5條 種과 亞種 : 한 種의 名稱은 두 單語(二名式)로, 한 亞種의 名稱은 세 單語(三名式)로 구성되며, 어느 경우에나 첫 單語는 屬名, 둘째 單語는 種名이고, 해당되는 경우에 세째 單語는 亞種名이다.

第6條 亞屬 : 한 亞屬의 名稱이 屬名 및 種名과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이들 두 名稱 中間의 팔호속에 넣는다. 그리고 이 亞屬名은 한 種의 二名式 名稱이나 한 亞種의 三名式 名稱의 한 單語로 간주되지 않는다.

III. 出版物의 基準

第7條 適用 : 이 章의 條款은 新로운 名稱에 관한 出版物뿐만 아니라 命名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보고에 관한 出版物에도 適用된다.

第8條 出版物을 構成하는 事項 : 이 規約의 의미하는 범위내에서 出版되었다고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著書의 初版發行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많은 같은 複寫物을 確保하는 어떤 方法으로 紙面에 잉크로 複寫되어야 할 것;
- (2) 科學的, 公的, 永久의 記錄을 目的으로 하여 발행되어야 할 것;
- (3) 購入 또는 無料配布로入手될 수 있어야 할 것; 또한
- (4) 禁止된 方法[第9條]으로 複寫 또는 配布되지 않을 것.

勸告 8A. 謄寫 및 類似 方法 : 動物學者들은 新로운 名稱 또는 命名法에 영향을 주는記事를 포함하는 出版에는 謄寫, 萊拉틴판작기 또는 이와 비슷한 方法을 쓰지 말도록 강력한 권고를 받는다.

第9條 出版物을 構成하지 않는 事項 : 이 規約의 의미하는 범위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行動은 出版物을 구성하지 않는다.

- (1)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카드 또는 이와 비슷

한 방법으로 複寫한 物件의 配布;

- (2) 비록 인쇄된 것이라 할지라도, 附圖의 설명으로서 註解를 등료, 학생들에게 配布하는 것;
- (3) 校正刷의 配布;
- (4) 科學關係 또는 다른 會合에 서의 陳述;
- (5) 採集品中の 標本에 라벨을 붙이는 것;
- (6) 文書를 圖書館에 단지 保管만 하는 것; 또는
- (7) 1950年보다 以後의 著者不明인 出版物.

IV. 有効性의 基準

第10條 名稱이 有効하게 되는 경우 : 어떤 名稱은 그 것이 第11條의 條款을 충족시킬 때에만 有効하게 되어 日字와 著者名을 가진다. 그 위에 또 어떤 日字 이후에 公表된 名稱은 第12, 13, 14條의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a) 中斷된 出版 : 만약 어떤 세로운 公稱分類群에 관한 資料의 出版이 중단되었다가 나중에 계속되면, 그 名稱은 모든 해당 條款을 충족시킬 때에만 有効하게 된다.

勸告 10A. 分割된 記載 : 編輯者는 科群보다 以下の 세로운 分類群의 記載를 나누었기 때문에 部分部分이 틀리는 시기에 出版되는 것을 許容하지 말아야 한다.

(b) 亞種보다 下位의 名稱 : 처음에 亞種보다 下位의 階級으로서 창설된 名稱은, 만약 그 分類群이 種群의 계급으로 升格된다면, 有効하게 되며, 또한 그 升格의 日字와 著者名을 가지게 된다.

第11條 一般 必要條件 : 어떤 名稱은, 有効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 條款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a) 出版物과 日字 : 出版物은 第III章에서 표시한 의미에 있어서, 1757年보다 후에 出版된 것이라야 한다.

(b) 言語 : 名稱은 라틴語거나 라틴語化한 말이라야 한다. 또는 여러 文字의任意組合인 경우에는 라틴語의 單語로서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VII].

(i) “j”, “k”, “w” 및 “y” 등의 文字는 新라틴語에 있어서는 혼란의 것인데, 動物學上의 名稱에 사용해도 두방하다.

(c) 二名式 命名法 : 著者는, 名稱이 公表되는 著作에 있어서, 二名式 命名法[II]의 原則를 始終 一貫하게 適用하여야 한다.

(i) 1931年보다 前에 關聯된 公稱 種名이 없이 公表된 一名式인 屬群名稱은 反證이 없는 경우에,

二名式 命名法의 原則에 合當한 것으로서 容納된다.

(ii) 1931年보다 前에 어떤 著作의 索引 中에서 公表된 名稱은, 만약 本條의 該當 條款과 第4, 5 및 6條를 충족시킨다면, 비록 그 저자가 著作의 本文中에 二名式 命名法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該當 動物의 記載, 表示 또는 그림에 대한 雜註한 文獻上의 引用이 있으면, 유효하며 또는 그것이 科群의 名稱이라도 그 科에 포함되는 한 公稱屬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유효하다 [第16條 a (ii)].

(d) 同物異名表 속에서의 公表 : 어떤 명칭은 처음에 同物異名으로 公表되는 것만으로서는 有効하게 되지 않는다. 단, 1961년 이전에 그 명칭이 原日字와 原著者名과 함께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 동시에 어떤 分類群의 명칭으로 채택되었거나 古參異物同名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有効하다.

(e) 科群의 名稱 : 科群의 名稱은, 처음에 公表될 때, 그에 包含된 한 屬의 有効한 名稱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主格 複數의 名詞라야 한다.

(i) 그 名稱은 屬보다 上位의 分類群을 表明하기 위하여 명확히 사용되어야 하며, 單純히 한 屬의 構成員들을 가리키는 複數名詞나 形容詞로서 사용되어서는 않된다.

(ii) 接尾語가 바르지 않는 科群의 名稱은, 올바른 形式으로 수정되면 原日字와 原著者名과 함께 유효하다.

例 : Latreille [1802—1803]는 *Typula* Linnaeus, 1758에 근거를 두어 科名 TIPULARIAE를 提案했다. 그 名稱은 TIPULIDAE로 訂正되어야 하고, Latreille [1802—1803]가 그 명칭을 창설한 것으로 되며 그 級字를 처음으로 訂正한 著者は 그렇게 되지 않는다.

(iii) 1900年보다 前에 公表된 科群의 名稱으로서 本節의 上記 여러 條款에 부합하지만 완전히 라틴語化되지 않은 것은 만약 其後의 著者에 의하여 라틴語化되고 그 關係群에 관심이 있는 動物學者들이 그 첫 發表 이후 地方名 形式으로 널리 사용하였다면, 原日字와 原著者名과 함께 유효하다.

例 : 科名 TETRANYCHIDAE는 一般的으로 Donniedieu, 1875가 창설한 것으로 한다. 그는 이 명칭을 "Tét-ranychidés"라고 발표하였지만, 그가 만든 명칭이 널리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 명칭은 그의 著作과

일자에 돌려져야 하며, 이 명칭을 처음으로 라틴語化한 Murray, 1877에 의하여 창설된 것으로 하지 않는다.

(f) 屬群의 名稱 : 屬群의 名稱은 主格 單數의 名詞, 또는 이와 같이 다루어지는 것이라야 한다.

(g) 種群의 名稱

(i) 한 種群의 名稱은 한字보다 많은 한 單語 혹은 한 複合語라야 하며, 또한 다음과 같거나 그와 같이 다루어지는 것이라야 한다.

(1) 性이 屬名과 一致하는 主格 單數의 形容詞 (例 : *Felis marmorata*), 또는

(2) 屬名과 同格인 主格 單數의 名詞(例 : *Felis leo*), 또는

(3) 屬格의 名詞(例 : *rosae, sturionis, thermopylarum, galliae, sanctipauli, sanctaelenae, cuvieri, merianae, smithorum*), 또는

(4) 問題의 動物과 관련이 있는 生物의 種名에서 유래한 屬格의 實名詞로서 사용된 한 形容詞(例 : *Lernaea lusci, Gadus luscus*에 寄生하는 桃脚類).

(ii) 種群의 名稱은 屬群의 名稱과 공등으로 공표되어야 하지만, 後者가 타당 또는 유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iii) 種群의 名稱은 接續詞로써 연결된 여러 單語로 구성되어서는 안되어, 또한 라틴語 形式으로 級字할 수 없는 記號를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例 : *rudis planusque*나 ?-*album*과 같은 表現은 種名으로서 許用되지 않는다.

第12條 1931年보다 前에 公表된 名稱 : 1931年보다 전에 公표된 名稱은 第11條의 條款들을 충족시키고 그 위에 記載·定義 또는 表示를 갖추어야 한다.

第13條 1930年보다 後에 公表된 名稱

(a) 全般 名稱 : 1930年보다 후에 公표된 名稱은 第11條의 條款들을 충족시키고, 그 위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i) 그 分類群을 分別하는 特징들을 表示하는 뜻의 記述를 隨伴할 것; 또는

(ii) 이러한 記述에 대한 명확한 文獻上의 引用을 수반할 것; 또는

(iii) 이미 있던 有効한 名稱의 代置名으로서 명백히 제안될 것.

(b) 屬群의 名稱 : 1930年보다 후에 公표된 屬群의 名稱은 第(a)의 條款들을 충족시키고, 그 위에 模式種의 명백한 결정을 수반하여야 한다(第68條).

(i) 이 節의 條款은 集合群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第66條).

第14條 1950年보다 後에 公表된 名稱: 1950年보다 후에, 著者名이 없이 공표된 새로운 名稱은 유효하지 않다.

第15條 1960年보다 後에 公表된 名稱: 1960年보다 후에, 條件附로 제안된 新名稱 또는 “變種”이나 “型”으로서 명백히 제안된 것[第45條 e)]은 유효하지 않다.

第16條 表示

(a) 表示量 構成하는 것: 이 章에서 使用되는 “表示”라는 用語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된다.

(i) 이미 出版된 記載·定義 또는 그림의 文獻的 引用;

(ii) 第11條 c(ii)의 條款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著書의 索引 中의 명칭을 포함한 것;

(iii) 이미 制定된 명칭에 대한 新名稱의 代置;

(iv) 어떤 屬名의 語幹으로부터 새로운 科群의 명칭을 구성한 것, 따라서 이 屬은 模式屬으로 된다;

(v) 한 새로운 屬群 名稱과 아울러 하나 또는 그 以上的 有効한 種名을 인용한 것;

(vi) 하나의 新公稱屬과 하나의 新公稱種을 함께 記載하여 각 名稱의 表示를 마련한 것;

(vii) 插畫와 単純시켜 새로운 屬群 또는 種群의 명칭을 공포한 것; 또는

(viii) 動物 그 自體의 記載를 갖추지 않더라도 그 動物이 만든 것임을 기재한 것.

(b) 表示量 構成하지 않는 것: 다음 것은 이 章이 의미하는 바로는 “表示”가 되지 않는다.

(i) 俗通名·模式產地·地質層位·宿主 또는 拟集品 종의 태별이나 標本 등을 記述한 것; 또는

(ii) 同物異名表에 명칭을 引用한 것[第11條 d)].

第17條 有効性을 막지 않는 條件: 어떤 명칭은 비록 다음과 같다 할지라도 有効하거나 有効성이 存續된다.

(1) 그 名稱이 新參同物異名으로 될 때: 만약 同物異名表가 잘못되었다고 判定되었거나, 그 古參同物異名이 無効하다거나 通用될 수 없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런 명칭은 다시 使用되어도 좋다; 또는

(2) 種群의 名稱의 경우, 하나보다 더 많은 分類의 單位에, 또는 하나보다 더 많은 分類群에 속하는 여러 動物의 一部에, 또는 後에 雜種이라는 것이 발견된 한 動物이나 여러 動物이, 原記載가 관계

된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또는

(3) 種群의 名稱의 경우, 그 명칭과 書 처음에 結合된 屬群의 名稱이 無効하다거나 通用될 수 없을 때; 또는

(4) 그 名稱이 한 動物의 어떤 部分, 한 種의 性, 生活史의 段階, 여러 가지 같지 않는 世代中의 하나 또는 多型種의 한 가지 里에만 근거를 두었을 때; 또는

(5) 그 名稱이, 現在는 動物이라고 생각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說明되었던 어떤 한 가지 生物에 대하여 제안되었던 경우; 또는

(6) 그 名稱이 第VII章의 여러 條款 중의 어느 것에 관련하여 틀린 緯字로 되었을 때, 이 경우에는 訂正되어야 하며, 그 訂正된 緯字는 유효한 것이라야 한다(第32條 c); 또는

(7) 1951年보다 전에 그 명칭이 無名으로 公표된 경우; 또는

(8) 1961年보다 전에 그 명칭이 條件附로 제안된 경우; 또는

(9) 1961年보다 전에 그 명칭이 “變種” 또는 “型”으로서 제안된 경우.

第18條 承認할 수 없는 破棄理由

(a) 不妥當性: 屬群 또는 種群의 명칭은, 一旦 創設된 以上, 비록 그 著者라 할지라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나중에 破棄할 수 있다.

例: *Polydon, Apus, albus, sinensis* 등과 같은 명칭은 一旦 公표된 以上, 그 명칭들이 문제의 動物이 所有하지 않는 특징이나 分布를 표시한다는 主張을 이유로 破棄되어서는 안된다.

(b) 反覆名稱: 어떤 명칭이 反覆名稱이라는 理由 即 種群의 이름 또는 이름들이 屬名과 같다는 이유로 破棄되어서는 안된다.

例: *Bison bison; Apus apus apus*.

第19條 修正과 誤記의 地位: 이 規約이 의미하는 바로는 修正名은 正當修正이던 不正當修正이던 유효한 명칭이다. 그러나 틀린 緯字는 原著의 것인 그 후의 것인든지 간에 命名法上の 地位를 갖지 않으며 따라서 유효한 명칭은 뜻된다[第32條 c, 33條].

第20條 化石에 주어진 -ites, -ytes, 또는 -ithes에 끝나는 屬群 名稱: 만약 어떤 이미 있던 屬群名稱을 그 原語尾 대신에 -ites, -ytes, 또는 -ithes를 써서 變形하였을 경우, 그 變形名은, 化石에만 適用된다면, 다른 頸 또는 亞屬은 칭호하여는 意向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限 유효하지 않다. 단 異物同名 法則[第56條 b]의 목적을 위한 경우는 여기서 제외된다.

例：屬名 *Pectinites* 및 *Tellinites* Schlotheim, 1813 은 現棲 屬 *Pecten* Müller, 1767와 *Tellina* Linnaeus, 1758에 屬한다고 생각되는 化石貝類를 表示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인데, 이들은 異物同名의 法則의 목적을 위해서만 유효하다.

V. 出版의 日字

第21條 日字의 解釋：어떤 著作의 出版 日字와 그 著作에 실린 命名法에 영향을 미치는 명칭과 記述은 本條의 條款들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a) 明記된 日字：어떤 著作에 明記된 出版日字는 그 렇지 않다는 증거가 없으면 바른 것으로 간주된다.

(b) 不完全한 日字：만약 出版日字가 완전하게 明記되어 있지 않으면, 증거에 의하여 나타난 가장 빠른 日字를 그 出版 日字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i) 月과 年은 明記되어 있지만 日이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月의 맨 끝날； 또

(ii) 年만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年의 맨 끝날.

(c) 바르지 않은 日字：어떤 著作에 명기된 出版日字가 바르지 않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 그 日字는 증거에 의하여 표시된 가장 빠른 日字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d) 部分으로 發行된 著作의 日字：만약 어떤 著作의 부분 부분이 서로 다른 날에 출판되었다면, 각 日字는 특별적으로 경계된다.

(e) 日字의 範圍：만약 어떤 著作 中에 들어 있는 명기된 出版日字에 日字들의 범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著作은 그 日字 범위中の 맨 끝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만약 증거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분이 그날 이전에 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 한 부분 또는 여러 부분은 증거에 의해 표시된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f) 記述이 없는 日字：出版日字에 관한 內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 著作은 全體的 또는 部分的으로 다른 著作에 실려 있는 記事등과 같은 外의 증거에 의해 표시되는 가장 바른 日字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勸告 21A. 編輯者, 發行者 및 著者의 責任：編輯者

및 發行者는 명기된 出版日字 이전에 著作의 어떠한複寫 또는 그一部를 배부하지 않는 것이 좋다. 著者들은 이러한 출판에 앞서 別刷를 배부하지 않는 것이 좋다.

勸告 21B. 出版物의 日字記入：編輯者와 發行者는 定期出版物의 각構成部冊, 또는 부분 부분 발간되는 어떤 著作의 정확한 발간 日字를 표시하도록 留意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출판된 部冊들을 全部 포함하는 완전한 한 卷은 각部冊의 명백한 出版日字와 그 部冊을 구성하는 정확한 面數, 圖版, 地圖等을 기술하는 것이 좋다.

勸告 21C. 司書의 責任：만약 어떤 著作이 動物學을 다룬 것이라면 司書들은 出版日字, 그 著作 또는 그 부분 부분의 目次, 또는 圖書館의 受領日字 등에 관한情報가 들어있는 카바를 除去하지 않는 것이 좋다.

勸告 21D. 別刷와 前刷에 관한 情報：別刷(抜刷)는 原本出版과 일치하는 面數, 出版日字 등을 포함하는 완전한 引證을 하기에 충분한 情報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前刷도 上記한 바와 같이 명확히 同一하게 하는 것이 좋다.

第22條 日字의 引用：만약 어떤 명칭의 出版 日字를 引用할 경우에는, 著者名 뒤에 코마를 찍고 日字를 기입한다.

勸告 22A. 引用의 方法：어떤 명칭의 出版日字를 인용할 때에는, 著者는

(1) 만약 그 名稱을 포함하고 있는 著作이 出版日字를 명시하고 있으면, 그 日字를 등근괄호 또는 모괄호 속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

(2) 만약 日字가 (1)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關聯著書에서 由來된 증거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그 日字 또는 그一部를 등근괄호 속에 넣는 것이 좋다. 또는

(3) 만약 日字가 外部 증거만으로써 결정되었다면, 그 日字 또는 그一部를 모괄호 속에 넣는 것이 좋다.

勸告 22B. 變更된 組合의 日字：만약 種群 名稱에 관하여, 변경된 組合 形式으로 原出版日字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日字를 原著者名과 함께 같은 등근괄호 속에 넣고 코마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第51條 d).

例：*Arion ater* (Linnaeus, 1758).

VI. 名稱의 有効性

第23條 先取權의 法則：어떤 分類群의 유효한 명칭은 만약 그 명칭이 이 規約의 어떤 條款에 따라 무효로 되지 않거나, 審議會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면, 그

分類群에 適用된 가장 오래고 有効한 名稱이다(下記節 (d)(i) 및 (e)의 條款을 考慮하여).

(a) 例外 : 가장 오래고 유호한 명칭이 아니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그 分類群의 유호한 명칭으로 된다.

(i) 만약 그것이 本條의 節 (b)에 따라 保全되는 경우; 또는

(ii) 만약 審議會가 特別히 그것을 有効하게 했을 때.

(b) 制限 : 어떤 명칭이 50年 동안 以上 主要 動物學 文獻에 古參 同物異名으로서 쓰이지 않고 있었을 경우에는 잊어진 名稱(遺失名 nomen oblitum)으로 간주된다.

(i) 1960年 보다 이후, 이러한 명칭을 발견하는 動物學者는 그것을 審議會에 委託하여, 적당한 公認 廢棄名 索引에 登錄하게 하든지, 또는 만약 이런 行動이 命名法의 安定性과 普遍性에 더 利害다면, 적당한 公認目錄에 등록하게 해야한다.

(ii) 遺失名은 審議會의 指示없이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iii) 이 條款은 一般 使用期間이 50年 未滿인 것이라도 應用動物學에서 中요한 명칭을 保全하기 위하여 審議會에申請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c) 階級의 變更 : 種群, 屬群 또는 種群에 속하는 어떤 分類群의 名稱에 관한 先取權은 그 群 안에서의 階級의 升格 또는 格下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d) 科群의 名稱

(i) 한 科群의 둘 또는 그 以上의 分類群을 통합하여 구성한 그 科群의 分類群은 그것의 構成要素들 중의 가장 오래고 有効한 科群名稱을 가지며 必要하면 語尾의 變化가 따른다.

(ii) 만약 어떤 動物學者가, 둘 또는 그 以上的 同物異名인 科群의 명칭에 대한 先取權 法則의 最格한 適用이 一般慣用法을 뛰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審議會에 어느 명칭이 動物學上의 科群 名稱의 公認目錄(3)에 受理되어야 할 것 인지를 決定하도록 要求하여야 한다.

(e) 屬群 및 種群의 名稱

(i) 둘 또는 그 以上的 屬群의 分類群이 統合되어 구성된 屬群의 分類群은 그 構成員들의 名稱 中 가장 오래고 有効한 명칭을 취한다.

例：屬 *A-us*, 1850와 亞屬 *B-us*, 1800의 統合으로構成된 屬의 有効 名稱은 *B-us*, 1800이다.

(ii) 둘 또는 그 이상의 種群分類群의 통합으로 구성된 種群 分類群은 그 構成員들의 名稱中 가장 오래고 有効한 명칭을 취한다.

(iii) 만약 下位分類群을 가지는 屬 또는 種의 명칭이 무효 또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은 同物異名을 포함하여 그 명칭에 포함되는 同位分類群 名稱中 다음으로 오래고 有効한 명칭으로서 代替되어야 한다.

例：屬 *A-us*, 1850는 亞屬 *A-us*, 1850, *C-us*, 1900 및 *D-us*, 1860를 포함한다. 만약 *A-us*란 名稱이 同物同名이라는 것이 발견되면, 이것은 그 屬의 명칭으로서, 다음으로 오래고 유호한 명칭 *D-us*, 1860로 代替된다.

(f) 緜字 : 名稱의 緜字에 대한 先取權 法則의 適用에 관해서는 第VII章을 참조하라.

第24條 가장 오래된 名稱의 解釋

(a) 同時に 公表된 名稱들 : 만약 하나의 分類群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名稱이 또는 별개의 分類群들에 대하여 같은 명칭들이 같은 著作이나 별개의 著作에 동시에 발표되면, 그 出現된 先取權은 最初의 改正者の 處理에 따라 결정된다.

(i) “最初의 改正者”라는 表言은 엄밀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同物異名의 경우, 著者는 둘 또는 그 以上的 同物異名을 引用했어야 하며, 그가 그 同物異名들이 같은 分類學的單位를 表示함을 믿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어야 하며, 또한 그 分類群의 명칭으로서 하나만을 선택했어야 한다.

勸告 24A. 最初의 改正者の 處理 : 이 節이 의미하는 바로는 “最初의 改定者”로서 處理함에 있어서, 動物學者는 命名法의 安定性과 普遍性을 가장 잘 보장할 명칭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名稱들 中에 이러한 利點을 가진 명칭도 없고, 어떤 特別한 妥當性을 가지는 명칭도 없는 경우에는 그 問題의 著作 中에서 위치가 先行되어 있는 명칭을 선택해야 한다.

(b) 動物의 어떤 部分이나 모양 또는 그것이 만든 것에 근거를 든 名稱 : 先取權의 法則은 다음 경우에 適用된다.

(i) 動物의 어떤 部分이 動物全體에 앞서 이름이 붙여진 경우; 또는

(ii) 한 種의 둘 또는 그 이상의 世代, 모양, 段階, 性에 別個의 分類群으로서 이름이 붙여진 경우;

또는

(iii) 1931年보다 전에, 명칭이 動物自體에 근거를 두기에 앞서 그 동물이 만든 것에 근거를 둔 경우.

VII. 名稱의 構成과 修正

第25條 名稱의 構成 : 動物學上의 명칭은 第26條 대지 第30條의 條款들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勸告 25A. 換字와 라틴語化 : 새로운 명칭을 구성하는 動物學者는, 命名法의 適當한 사용과 普遍性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換字와 라틴語化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附錄 B 대지 D를 참고하여야 한다.

第26條 複合語의 名稱

(a) **받아들일 수 있는 複合語** : 著者가 正式으로 二名法의 原理를 適用한 어떤 著作 속에서, 만약 複合名에 근거를 둔 명칭이 두 分離된 單語로서 공표된다면, 그 構成單語들은 하이픈이 없이 결합되어야 하며, 또한 그 명칭은 처음부터 그런 形式으로 공표된 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하이픈을 넣는 複合語의 취급에 관해서는 第32條 c(i)를 보라).

例: *Coluber novae hispaniae* Gmelin은 *Coluber novae hispaniae*로, *Calliphora terrae novae* Macquart는 *Calliphora terraenovae*로, 宿主 種의 二名式 명칭에 근거를 둔 *Cynips quercus phellos* Osten Sacken은 *Cynips quercusphellos*로 訂正된다.

(b) **複合語 中의 數詞** : 한 複合名稱의 부분을 구성하는 數詞 또는 數字의 形容詞나 副詞는 한 단어로서 완전히 쓰고 그 명칭의 남아지 부분과 결합하여야 한다.

例: *decemlineata* 이고 *10-lineata*는 아니다.

(c) **複合語 中의 라틴文字** : 만약 種群의 複合名稱의 첫 要素가 그 分類群의 特징을 표시하는 데 쓰인 라틴 文字라면, 그것은 그 명칭의 나머지 부분과 하이픈으로 결합한다.(例, *c-album*).

第27條 發音符號와 其他 符號 : 發音符號, 아포스트로피 또는 分音標는 동물학상의 명칭에 사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하이픈은 第26條 c에 명기한 바와 같게만 사용해야 한다.

第28條 머릿文字 : 種群 및 屬群의 명칭은 大文字인 머릿文字로 또 種群의 명칭은 小文字인 머릿文字로 인쇄되어야 한다.

第29條 科群 名稱의 構成 : 한 科群의 명칭은 模式屬名稱의 語幹[語彙를 보라]에 科의 경우에는 -IDAE

를, 亞科의 경우에는 -INAE를 첨가하여 구성한다 [附錄 D, 表 2, A篇를 보라]

勸告 29A. 上科와 族 : 上科의 명칭에는 語尾-OIDEA를, 族의 명칭에는 -INI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

(a) **古典 起原의 屬名** : 動物命名法에 있어서는, 만약 模式屬의 명칭이 그리스語 또는 라틴語의 單語거나 그와같이 끝나든지, 아니면 그리스語 또는 라틴語의 接尾語로 끝난다면, 語幹은 適當한 屬格單數의 格語尾를 삭제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다[附錄 D, VII를 보라].

(i) 이 規約에서 “라틴”이란 單語가 쓰인 곳에서는 그것은 古代, 中世 및 現代 라틴語를 포함한다. 그러나 “그리스語”라는 單語는 古代 그리스語만을 가리킨다[第11條 b(i)도 보라].

(b) **古典 起原이 아닌 屬名** : 만약 模式屬의 명칭이 그리스語 또는 라틴語가 아닌 단어이거나 그와 같이 끝나든지, 여러 文字의任意組合으로 된 단어인 경우에는, 語幹은 그 公稱屬에 근거를 둔 科群의 명칭을 처음으로 공표한 動物學者에 의하여 결정된다[附錄 D, VII를 보라].

(c) **그리스語로부터 라틴語化한 屬名** : 만약 模式屬의 명칭이 語尾를 바꾸어 라틴語化한 그리스語單語이든지 그들과 같이 끝나면, 語幹은 라틴語化한 形式으로서 適切한 것이다.

例: *Leptocerus*에 관해서는 그 第二部分은 *keras*에서 由來한 것인데, 科群 名稱의 구성을 위한 語幹은 *Leptocer-*이고, *Leptocerat-*가 아니다.

第30條 性의 一致 : 어떤 種群의 명칭은 만약 主格單數의 形容詞라면, 그것이 언제든지 組合되는 屬名과 性에 있어서 一致되어야 하며, 또 그 語尾는 그種이 다른 屬으로 移轉될 경우, 만약 必要하다면 바꾸어져야 한다. 어떤 屬群의 명칭의 性은 다음 條款에 의해 결정된다.

(a) **그리스語 또는 라틴語 單語로 구성되든지 그것** 같이 끝나든가 또는 그리스語나 라틴語의 接尾語로 끝나는 屬群 名稱.

(i) 그리스語 또는 라틴語 單語이거나 그것같이 끝나는 屬群 名稱은 審議會가 다른 式으로 規定하지 않는限, 標準 그리스語 또는 라틴語辭典에서 그 單語에 주어진 性을 취한다.

例: 名稱의 全部 또는 一部로서 變化 없이 라틴語로 換字한 그리스語 名詞는 이를테면 *Hoplites*는 ὅπλιτ-ς로부터 온 것인데 男性 *Ichthyornis*는 -ὅψις로 끝

나는데, 男性; *Wattonithyris* 는 *-θίρις*로 끝나는데, 女性이다. 그리스어의 ὄψ(“소리” 드물게 “얼굴”, 단下記 (2)를 보라)에서 유래한 *-ops*로 끝나는 명칭 및 *-opsis(ἀψις)*, *-gaster(γαστηρ)*, *-caris(κάρις)*, 또는 *-lepis(λεπίς)* 등으로 끝나는 명칭은 女性이다. 라틴語의 *tuba*에서 유래한 *Tuba*는 女性이다. *-us*로 끝나는 어떤 라틴語名詞의 명칭은 女性이다(例: *-alvus*, *-humus*, *-vannus*, *-fraus*, *-laus*, *-acus*, *-colus*, *-domus*, *-tellus*). *-ceras(κέρας)*, *-soma(σῶμα)*, *-stigma(στίγμα)*, 또는 *-stomia(στόμια)*로 끝나는 명칭은 中性이다.

(1) 名稱은, 原著者가 달리 記述하지 않는限 같은 級字의 그리스어 또는 라틴語의 단어라고 간주된다.

(2) 男性 또는 女性으로 性이 번갈 수 있는 名詞는 처음에 그 명칭을 공표할 때, 原著者가 그것이 女性이라고 하든가, 또는 形容詞形 種名과 組合할 때 그렇게 다른다는 것을 기술하지 않는限, 男性으로 다루어진다.

例: *Sylvicola* 뒤에와 같이 *-cola*로 끝나는複合 라틴語名詞는 男性으로 간주된다. 그리스어의 ὄψ(“얼굴” 또는 “눈”)에서 유래한 *-ops*로 끝나는 명칭은 그普通인 古典的 性은 男性인데, 原著者가 다르게 표시하지 않는限, 또는 이러한 표시가 없어서 動物學者들이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女性으로 다루어 오지 않은限 男性으로 다루어져야 한다.(ὄψ에서 유래한 명칭에 관해서는 上記 (i) 밑의 例를 보라).

(3) 만약 어떤 屬群 名稱이 語尾의 變更으로서 라틴化된 그리스어單語일 경우에는, 그것은 그 語尾에 알맞는 性을 갖는다.

例: 그리스어의 語尾 *-os(ος)*(男性 또는 女性), *-α*(中性), 또는 *-ον(ον)*(中性)으로부터 라틴語化된 *-us*로 끝나는 명칭은 男性이다. 이를테면 *-echinus(εχινος)*, *echinos*, *-cephalus(κεφαλή)*, *kephale*, *-crimis(κριμις)*, *krinon*, *-stomus(στόμα)*, *stoma*, *-somus(σῶμα)*, *soma*, *-cheilus(χειλος)*(*cheilos*), *-gnathus(γναθός)*, *gnathos*, *-rampus(ράμφος)*, *rhamphos*, *-rhynchus(ρυνχός)*, *rhunchos*, 또는 *-stethus(στήθος)*, *stethos* 등이다. *-cera(κέρας)*, *keras* 또는 *-metopon(μετωπον)*, *metopon*로 끝나는 명칭은 女性이다.

(4) 만약 어떤 屬群 名稱이 語尾가 變更된 라틴語單語일 경우에는, 그것은 새로운 語尾에 알맞는 性을 갖는다.

例: *Dendrocygna*는 부분적으로는 男性인 *cygnus*로부터 구성된 것이지만, 女性이다.

(ii) 그리스어나 라틴語接尾語, 또는 이와 같이 생각되는 한 文字 또는 몇 文字로 끝나는 屬群名稱은 그 語尾에 알맞는 性을 갖는다.

例: *-ides*, *-istes*, *-ites*, 또는 *-oides*로 끝나는 명칭은 男性이다. *Scatella*와 *Oculina*와 같은 명칭들은 각각 그리스어의 中性 名詞인 *σκάτη*, *σκάτος*와 라틴語의 男性 名詞인 *oculus*에서 유래했지만, 그 接尾語 때문에 女性이다. 古典語가 아닌 單語 또는 文字의 任意組合에 근거를 둔 명칭에는 그리스어나 라틴語의 接尾語를 붙이고 그 接尾語에 알맞는 性을 갖게 한다. 예컨대 *Buchia*(von Buch로부터), *Cummingella*(Cumming으로부터), *Vellezia*(Velle로부터), *Dafila* 및 轉綴語 *Solubea*는 全部 女性으로 다루어지지만 轉經語 *Daption*은 中性으로 다루어진다.

(b) 全的으로 非古典 起原인 屬群의 名稱

(i) 性을 가지는 現代 인디아—유럽系 言語의 단어를 정확하게 再現한 屬群의 명칭은 그 단어의 性을 갖는다.

例: 도이치語인 “die Pfrille”에서 유래한 *Pfrille*는 女性이다.

(ii) 그리스어, 라틴語도 아니고 現代 인디아—유럽語도 아닌 단어 또는 文字들의 任意組合인 단어로 구성되는 屬群 名稱은 그 著者가 명백히 부여한 性, 또는 原來 連合되었던 種群 名稱에 의하여 暗示되는 性을 갖는다. 만약 부여되었거나 暗示된 性이 없다면 그 語尾가 확실히 本來의 古典 女性이나 中性인 것이여서 그 性이 그 語尾에 알맞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名稱은 男性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例: *Dacelo*(Alcedo의 轉經語)는 그 著者가 다른 바와 같이 女性이다. 그러나 *Vanikoro*, *Gekko*, *Abudelfaduf* 및 轉綴語인 *Milax*는 男性으로 다루어진다.

勸告 31A. 現代人名으로부터 構成된 種群 名稱: 種群名稱은 만약 現代人名으로부터 구성된 名詞라면, 그人名이 한 男子의 이름인 경우에는 *-i*로 끝나야 하고, 여러 男子의 이름 혹은 한 男子(男子들)와 한 女子(女子들)를 함께 한 이름인 경우에는 *-orum*, 한 여자의 경우에는 *-ae*, 그리고 여러 女子인 경우에는 *-arum*으로 끝나야 한다[第11條 g(i) (3)과 附錄 D III을 보라].

第32條 原著의 級字

(a) 올바른 原著의 級字: 어떤 명칭의 原著級字는 다

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바른 原著 緡字”로서 유지된다.

(i) 第26條 내지 30條의 本則 條款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ii) 原著 中의 誤記 또는 清書者나 印刷者の 잘못 등과 같은 不注意로 말미암은 잘못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틀린 換字, 不適當한 韶連語化 및 不適當한 連結母音의 사용은 不注意로 말미암은 잘못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또는

(iii) 科群 名稱의 경우, 語尾의 必要한 訂正이 있은 것(分類群의 階級의 變更으로 말미암은 부득이한 경우 以外의 것), 또는 模式屬의 頭章의 語幹에 있어서의 정당한 訂正[第33條 a].

(b) 多樣한 原著 緋字: 만약 어떤 명칭이 原著中에서 한가지 이상으로 緋字되었다면, 맨 처음의 訂正者가 채용한 緋字를 올바른 原著 緋字로서 남아들여야 한다. 단, 그 채용된 緋字가 第26條 내지 第30條의 여타 條款에 따라 訂正을 必要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c) 틀린 原著 緋字: 原著 緋字로서 第26條 내지 第30條의 諸條款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또는 不注意로 말미암은 잘못인 것[第32條 a(ii)], 또는 맨 처음의 訂正者에 의하여 採用되지 않은 多樣한 緋字[第32條 b] 中의 하나인 것은 “틀린 原著 緋字”이다. 따라서 어느 곳에서든지 발견되면 訂正되어야 한다. 이런 틀린 緋字는 命名法上 獨立된地位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異物同名 속에 들어가지 못하며 또한 置換名으로 쓰일 수도 없다.

(i) 區別的發音符號, 省略符號, 分音票 또는 하이픈을 붙여 공표된 명칭은, 해당부호를 삭제하고 또 그 결과 생긴 부분들을 연결함으로써 訂正되어야 한다. 但 하이픈의 유일한 特殊用途[第26條 c]를 제외하고, 또한 도이치語 단어에서는 움라우트標는 母音에서 제거하고, 그 母音 뒤에 “e”를 插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例: 名稱 *terrae-novae* 는 *terraenovae*로, *d'urvillei*는 *durvillei*로, 또 *nunezi*는 *nunezi*로 訂正되지만, *mülleri*는 *muelleri*로 되며 *mulleri*의 異物同名이 아니다[第57條 d].

第33條 事後 緋字

(a) 修正: 論證에 의하여 어떤 名稱의 原著 緋字를 故意로 변경하는 것이 “修正”이다.

(i) “不當한 訂正”은 틀린 原著 緋字의 訂正이며,

이렇게 수정된 명칭은 原著 緋字의 日字와 著者名을 갖는다.

(ii) 이 以外의 어떠한 수정도 “不正當한 訂正”이다; 이렇게 수정된 명칭은 그 自身의 日字와 著者名을 隨伴하는 命名法上의 地位를 가지며, 그 원래 명칭의 新參客觀 同物異名이다.

(b) 틀린 事後 緋字: 訂正 以外에는 명칭의 緋字上의 어떠한 變更도 “틀린 事後 緋字”이다. 그리고 그것은 命名法上의 地位를 가지지 않고 따라서 異物同名中에 넣지 않으며 置換名으로서 사용될 수 없다.

第34條 語尾

(a) 科群의 名稱에 있어서: 科群 名稱에 있어서, 어떤 分類群이 階級上 昇格 또는 格下될 때에는 그 語尾는 변경되어야 한다.

(b) 種群의 名稱에 있어서: 種群의 명칭에 있어서, 必要하다면 種群 名稱과 結合되는 屬名의 性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언제든지 그 語尾는 변경되어야 한다[第30條].

VIII. 科群의 分類群과 그 名稱

第35條 範疇와 그 名稱:

(a) 內包되는 範疇: 科群은 族, 亞科, 科 및 上科와, 또한 어떤 必要로 하는 前足 範疇를 内包한다.

(b) 根據: 科群의 각 分類群은 그 模式屬을 參照하여 定義된다[XIII, XIV를 보라].

(c) 名稱: 科群 名稱은 第29條의 關係 條款에 따라 定義되어 타투어져야 한다.

第36條 範疇의 同等: 科群內의 모든 範疇는 命名法上 同等地位에 있다. 即, 그것들은 같은 規則과 告勸에 따르며, 또한 이 群의 어떤 範疇의 分類群에 대하여 設設되고, 一定한 模式屬에 依據한 名稱은, 그 대로, 다른 각 範疇에 있어서 같은 模式屬에 의거한 어떤 分類群에 대하여 알맞는 接尾語의 變更으로써 그 名稱의 原著 日字와 著者名과 함께 有効하게 된다.

例: *Hesperia Fabricius, 1793*에 의거한 HESPERIIDAE Latreille, 1809 (HESPERIDES로서)의 提案은, 그대로, 上科名 HESPERIOIDEA 와 亞科名 HESPERIAE를 1809年부터 有効하게 한다. 이 경우에 前者는 처음에 Comstock, G.H. & A.B., 1904가 後者는 Watson, 1893이 使用하였지만, 이런 사길에 구해를 받지 않는다.

第37條 下位의 分類群: 다시 區分된 科群 分類群의 模式屬을 包含하는 下位 分類群은, 接尾語를 除外하고는, 前者와 같은 名稱을 가지며, “承名” 下

位分類群이라 불리운다(이를테면, 承名亞科, 承名族)。

例: 公稱科 TIPULIDAE (模式屬 *Tipula* Linnaeus, 1758)는 여러가지 亞科로 나뉘며, 각 亞科는各自의 模式屬에 따라 名稱이 붙여진다. *Tipula*를 包含하는, 亞科 TIPULINAE는 TIPULIDAE의 承名 亞科이다.

第38條 科群 名稱 間의 異物同名: 第55條를 보라.

第39條 模式屬의 異物同名: 科群 分類群의 名稱은 그 公稱 模式屬의 名稱이 新參 異物同名인 경우에는 無効하다.

第40條 模式屬의 同物異名: 1960年 보다 以後에, 한 公稱 模式屬이 新參 同物異名(客觀的 또 主觀的)으로서 破棄될 때에는, 그것에 依據한 科群 名稱은 變更될 것이 아니라, 古參 同物異名 및 新參 同物異名을 包含하는 科群 分類群의 有効한 名稱으로서 存續되어야 한다.

(a) 特定 名稱의 存續: 만약 1961年보다 以前에, 이런 同物異名으로 말미암아 變更된 科群 名稱이 一般的으로 容認되었다면 安定性을 위하여 그 名稱은 存續되어야 한다.

(i) “一般 容認”이라는 表現에 관하여 서로 다른 설명이 나타날 경우에는, 審議會에 照會를 해야 한다.

(b) 存續된 名稱의 日字: 節(a)의 條款에 의하여 採用된 名稱은 破棄된 名稱의 日字를 가지며, 그 名

稱은 破棄 名稱의 古參 同物異名이라고 친주되어야 한다.

例: 만약 한 原著의 模式屬 *A-us*가 *B-us*의 新參 同物異名이라면 :

(1) 1961年보다 以前에 *A-IDAE*가 *B-IDAE*에 의하여 아직 置換되지 않았거나, 혹은 *B-IDAE*가 아직 一般的으로 容認되지 않았을 경우, 그때에는 *A-IDAE*는 그 科의 名稱으로서 存續되어야 한다;

(2) 그러나 만약 *A-IDAE*가 이미 *B-IDAE*에 의하여 置換되었고, 또 後者가 一般 容認을 얻었다면, 그때에는 *B-IDAE*는 올바른 名稱으로서 容認되어야 하며, 또한 *A-IDAE*의 古參 同物異名으로 친주되어야 하고, *A-IDAE*의 것과 같은 日字를 수반 한다.

勸告 40A. 著者와 日字의 引用: 만약 著者와 日字가 引用되는 경우 [附錄 E9를 보라], 第39 또는 40條의 條款下에 採用된 科群 名稱은 그 自體의 著者 및 日字와 더불어 引用되어야 하며, 그 뒤에 置換된 名稱의 日字를 둥근括弧 속에 넣어 둔다.

第41條 賈否 同定된 模式屬: 만약 어떤 公稱 科群 分類群이 대표하는 意味에 있어서 安定性과 存續性이, 그 公稱 模式屬이 賈否 同定된 模式種에 의거했다는 것이 發見 되었거나, 혹은 模式標本 指定을 빠뜨렸다는 것이 發見됨으로써, 威脅을 받을 경우에는 그 樣은 審議會에 提出되어야 한다[第 65, 70條].

(以下 次號에 계속)